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정절차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77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원칙적 공개, 조정회의록 작성·보존 공개 등 (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민희의원 등 14인

나. 제 출 일 : 2026. 1.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녹화·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원칙적 공개, 조정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등 (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개정안은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① ~ ⑦ (생략)	제19조(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조정은 <u>비공개</u> 를 원칙으로 하되, <u>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u>	⑧ ----- <u>공개</u> 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설></u>	1. <u>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u>
<u><신설></u>	2. <u>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신설></u>	3. <u>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u>
<u><신설></u>	4. <u>취재원 등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u>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⑩ <u>중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조정회의록을 작성·보존하</u>

현행	개정안
<신설>	<u>고 공개하여야 한다.</u> <u>1. 조정의 주요 진행 사항</u> <u>2. 당사자 및 조정위원, 참고인의 발언</u> <u>3. 조정안 및 조정 결과</u> <u>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회의 공개와 조정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18조제1항¹⁾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19조제8항²⁾에 따라 해당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의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녹화·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조정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의 조정절차는 법원의 소송 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로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제3자의 관여 또는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제도로 분쟁 조정의 신속성, 당사자 의사결정의 존중, 사적인 절차 진행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³⁾.

사적인 절차 진행은 조정절차가 공개되면 해당 절차에서 제시된 정보나 당사자의 발언이 추후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절차의 비밀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⁴⁾.

이에 따라 「민사조정법」 제20조⁵⁾,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⁶⁾,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류승훈, 언론중재 2009년 봄호(통권 제110호), p.7

4) 「조정의 원리와 비밀유지 의무」, 이로리, 언론중재 2023 Autumn, p.7

5)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7), 「저작권법」 8)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언론중재위원회의 침해유형별 조정 신청 현황 >

연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22	3,175	3,093	41	2	2	15	19	3
2023	4,085	4,042	21	1	3	3	4	11
2024	3,937	3,810	85	6	3	1	4	28
합계	11,197	10,945	147	9	8	19	27	42
비율	100.0%	97.7%	1.3%	0.1%	0.1%	0.2%	0.2%	0.4%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명예훼손 등 사생활 영역과 관련되어 개정안 제19조제8항 제1호9)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조정절차의 목적·특성 및 비공개 해당 여부 판단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절차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7)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저작권법」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조정) ⑧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목적으로 조정절차의 비공개는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며, 조정절차를 공개하는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의 핵심인 양보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필수적이므로, 외부의 시선으로 인한 방어적 태도 형성을 방지하고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대부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준용¹⁰⁾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역시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적 정합성 및 일반 민사분쟁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언론분쟁의 조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경우 조정 당사자들의 진술을 위축시켜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워지고, 합의 및 절충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조정 사안의 ‘2차 노출’로 인해 사생활·명예 침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 보장이 필요하며,

조정회의록이 ‘공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조정제도의 남용 및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적 부담 증가 및 조정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취재원 보호 조항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취재원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고,

조정 과정에서 정보 입수 경위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¹¹⁾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1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회의록 공개 시 취재원 및 취재 과정 정보의 직·간접적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취재원 보호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조정은 신청인과 언론사 간 합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비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협의가 본질적 철학이므로 조정 절차의 공개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고, 사생활 정보·영업 비밀·취재원 보호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의 공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져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켜 언론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개 자료가 당사자에 의해 유리하게 해석 및 왜곡되어 공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정치적·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0